

미성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2003. 6. 19. 조합설립인가가 된 미성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용답동 59-2번지 소재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의2 제3항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7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사업명칭 : 미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9-2 외 2필지

나. 면 적 : 2,922.60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합명칭 : 미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나. 소 재 지 : 성동구 용답동 59-2

4. 조합설립인가일 : 2003. 6. 19.
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25. 8. 7.

6. 취소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같은 법 제86조의2 제3항 및 제12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